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0. 26.(월)

검 토 안 건	발 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검토안건

- 안건명 :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10. 12.
- 회부일 : 2020. 10. 13. (의안번호 : 20-134)

3. 제출이유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가칭)창전동 청년주택 어린이집 운영사무
- 나.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다.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위 탁 대 상 시 설	
시설명	(가칭) 창전동 청년주택 어린이집	
소재지	마포구 창전동 19-8	
규모(m ²)	200.9	
예정 정원 (명)	30	
확충유형	신규 - 공동주택 관리동 1층 - 무상임대(무기계약)	
위치도		

라.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바. 소요예산 : 160백만원(국비 60, 시비 76, 구비 24)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비 확보 예정

사. 추진일정

- 1) 2020.11.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고
- 2) 2020.12.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3) 2020.12. : 무상임대 협약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 4) 2021.1~2 :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구매
- 5) 2021. 3. : 구립어린이집 개원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 ~ 제22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위탁운영 시설은 가칭 “창전동 청년주택 어린이집” 이며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로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등 관련법령에도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2020년 9월말 현재 총 202개 어린이집 중 구립 어린이집은 76개소로 약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수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수가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에 30개소가 늘어 연 평균 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비록 구립 어린이집 설치가 적지 않은 예산을 수반하고 대상 시설 확보가 쉽지 않으나, 구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갈망하는 학부모의 수요충족 욕구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1〉 구립 어린이집 연도별 증가현황

		(2020.9월 기준)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구립어린이집 수 (증가 수)	49 (3)	62 (13)	68 (6)	70 (2)	76 (6)	5년간 30개소 증가	

※ 2021.1월 공덕sk리더스뷰 구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 예정

〈표 2〉 서강동 지역 보육여건

- 영유아 현황 : 총1,120명(영아 463명, 유아 657명)
- 국공립대기자 : 558명
- 어린이집 설치 현황

행정동 (서강동)	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 간			가 정			유 치 원
				계	서울형	일반형	계	서울형	일반형	
시설수	12	7	1	4	1	3	0	0	0	0
정원(명)	703	414	49	240	47	193	0	0	0	0
현원(명)	628	358	30	240	47	193	0	0	0	0
충족률(%)	89.3	86.5	61.2	100	100	100	0	0	0	0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9>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5.3>